

등록번호	주택관리과-11143
등록일자	2024. 4. 11.
결재일자	2024. 4. 11.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주거복지 팀장	주택관리 과장	도시주택국 장		
최은미	최영은	이석원	윤영호	전결 2024. 4. 11.	
협조자					

- 주거약자인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-  
**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변경 계획(안)**



**인천광역시서구**  
**[주택관리과]**

# 결재요지

## 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변경 계획(안)

### □ 변경사항

#### ○ 신청기간

변경 전	변경 후
2024. 3. 25.(월) ~ 4. 12.(금)	2024. 3. 25.(월) ~ 5. 31.(금)

#### ○ 추진일정

변경 전	변경 후
- 2024. 3월 ~ 4월: 사업홍보 및 신청·접수 (동 행정복지센터)	- 2024. 3월 ~ 5월: 사업홍보 및 신청·접수 (동 행정복지센터)
- 2024. 5월: 대상자 서류 심사 후 선정	- 2024. 6월: 대상자 서류 심사 후 선정
- 2024. 5월: 대상자 선정 알림(구⇒신청인)	- 2024. 6월: 대상자 선정 알림(구⇒신청인)
- 2024. 5월 ~ 6월: 대상자 주택 현장 조사	- 2024. 7월: 대상자 주택 현장 조사
- 2024. 6월: 공사 착공	- 2024. 8월: 공사 착공
- 2024. 9월: 공사 준공	- 2024. 9월: 공사 준공

#### ○ 행정사항(동 행정복지센터)

변경 전	변경 후
- 홍보실적 제출: 4월 17일(수) · 자생단체 회의 시 5회 이상 홍보 · 홈페이지 2회 이상 게재	- 홍보실적 제출: 6월 7일(금) · 자생단체 회의 시 총 8회 이상 홍보 · 홈페이지 총 4회 이상 게재

\*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홍보실적은 2024년 군·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지표로 홍보실적 강화 및 접수기간 연장에 따른 건수 추가

- 주거약자인 장애인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-  
**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변경 계획(안)**

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1 추진근거

-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주택개조비용 지원)
- 「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」 제5조(주거복지사업)

## 2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24년 3월 ~ 9월
- 지원인원: 16가구
- 지원대상: 자가·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
- 소득기준: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

<통계청 발표 ('24.2.29) 기준>

(단위: 원)
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이상
소득액	3,482,964	5,415,712	7,198,649	8,248,467	8,775,071

\*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(788,211원) 합산 산정

\* 소득 산정시 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

- 지원내용: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
  - 가구당 지원금액: 호당 380만원 범위 내(재료비 및 인건비 포함)
  - 항목: 주택내 출입로·경사로 설치, 문턱 제거, 안전손잡이 설치 등
- 사 업 비: 60,800천원(국비50%, 시비25%, 구비25%)

### 3

## 세부 추진계획

### □ 지원자격

#### ○ 지원대상자

- 「장애인복지법(제2조)」에 해당 하는 등록 장애인
- 자가주택은 세대주(또는 보호자)가 신청,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해당 임대주택을 임차한 장애인(또는 보호자)의 협의\* 후 일방이 신청
- \* 임대인은 임차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(장애인복지법 32조)에게 4년간 임대 의무 필요

#### ○ 지원 제외 대상

- 국가·지자체·공공·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(2021~2023)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
- \*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(자가가구)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
- 다만, 장애인의 편의시설·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(항목)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

### □ 대상자 선정방법

#### ○ 선정기준

- 1순위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자,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

<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50호, 기준 중위소득>

구분	1인	2인	3인	4인	5인 이상
금액(원/월)	2,228,445	3,682,609	4,714,657	5,729,913	6,695,735

#### ○ 경합 시 선정기준

- 1순위 또는 2순위 지원 신청자 내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발

-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, 뇌병변, 시각 장애인
-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
- ③ 지체, 뇌병변,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
-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
- ⑤ 개조가 시급한 주택(편의시설 설치 유·무, 노후도 등)에 거주하는 장애인
-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

## 지원대상 주택 및 편의시설

### ○ 주택기준

- 「주택법(제2조)」에 해당하는 주택 등\*

\* 비닐하우스, 컨테이너,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주택개조비용 지급 부적합 대상이나,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

### ○ 설치기준

-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,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 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[붙임4]\*」을 적용

\*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【별표1】 「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」 적용

- 다만,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,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·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
-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 (도배·장판 등 마감공사) 가능

### ○ 편의시설 선정

- 지원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·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, 장애인 등의 의견\*을 충분히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설치

\*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,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장애인의 신청 (우선순위 등 포함)을 받아 편의시설을 최종 선정

## 4 신청방법 및 절차

### 신청방법

- 신청기간: 2024. 3. 25.(월) ~ 5. 31.(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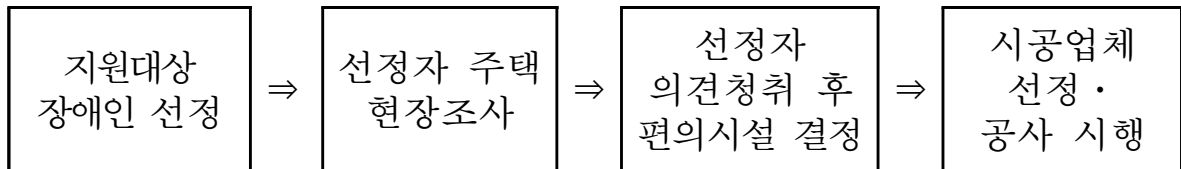
- 신청접수: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\* 자가 주택은 세대주(또는 보호자)가 신청,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해당 임대주택을 임차한 장애인(또는 보호자) 협의 후 일방이 신청

## ○ 제출서류

-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
- ② 임차가구: 지원 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, 임대인 신분증 사본  
\* LH, iH 소유 주택(전세임대주택은 제외)의 경우 구에서 지원동의서 일괄 징구
- ③ 개선항목 체크리스트(적용대상 작성)
- ④ 주민등록등본 1부
- ⑤ 수급자·차상위 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 1부
- ⑥ 소득금액증명원(2022년)(수급자, 차상위 외 소득입증)

## □ 사업절차



## 5

### 추진일정

- 2024. 3월 ~ 5월: 사업홍보 및 신청·접수(동 행정복지센터)
- 2024. 6월: 대상자 서류 심사 후 선정
- 2024. 6월: 대상자 선정 알림(구⇒신청인)
- 2024. 7월: 대상자 주택 현장 조사
- 2024. 8월: 공사 착공
- 2024. 9월: 공사 준공

## 6

### 행정사항

#### □ 사업부서(구 주택관리과)

- 자체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
- 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
- 지원대상자 선정
-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시행
- 준공 검사 및 만족도 조사

## □ 동 행정복지센터

- 홍보 실적 [붙임3] 제출: 6월 7일(금)까지
  - 자생단체 회의 시 8회 이상 홍보
  - 홈페이지 4회 이상 게시
    - \*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홍보실적은 2024년 군·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지표로 홍보실적 강화 및 접수기간 연장에 따른 건수 추가
- 신청서 접수 및 검토(구비서류, 자격여부 등)
- 신청서 매건 공문(신청서 스캔 첨부) 시행 및 원본 서류 송부

- 붙임 1. 신청서 등 서식 각 1부.  
2. 홍보지 및 안내문 각 1부.  
3. 홍보실적 제출서식 1부.  
4. 편의시설 설치기준 1부. 끝.